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5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에 대해 식물검역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 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까지 이루어질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됨.

이에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에 대한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안 제12조제10항 신설),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온·오프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가. 우편물·택송품에 정확한 식물명 기재 의무 규정

우체국장 등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등으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로 하여금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해당 식물의 정확한 품명을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수입 금지품 및 검역미필품 등 국내 유통 단속 강화

현행법 상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규정 및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이 부재한바,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 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개정안은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금지품 등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안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금지 식물 등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다음 표 ①, ②, ④에 해당하는 수입금지 식물 등을 최초로 수입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는바, 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